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399
----------	------

제안년월일 : 2018. 2. 23.

제안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주문

- 최근 대형화재 급증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소방시설법령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이라 판단되는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제천 스포츠센터('17.12.21) 및 밀양 세종병원('18.1.26) 등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안전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여전히 제자리인 실정임.
- 따라서 화재에 취약한 피난약자시설물과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

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등의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한편,

- 소방특별조사와 관련해 당해 건축물 관계인에게 사전 서면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불시 조사가 일반화되도록 개정하고, 소방안전 관련 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여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크게 제고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타사항 : 없음

4. 이송처

가. 국회 : 행정안전위원회

나. 정부 : 행정안전부, 소방청

5. 첨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남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17.12.21)’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는 과거의 화재사례들과 비교할 때 문제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 현행 법제도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명확히 시사하고 있다.
- 일례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의 소방안전설비를 보면, 각각 복합용도와 피난약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면적기준 적용으로 자동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외되었었던 점과
- 사망자 중 연기에 의한 질식사자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기준이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 역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 또한, 화재 발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평상시부터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소방시설들은 관련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형식적 점검이나 무관심 속에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 소방특별조사의 경우도 조사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

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니 조사가 끝난 후에는 다음 조사 통보 시까지 불법상태로 회귀하도록 방치하는 측면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따라서 복합건축물 및 피난약자 대상 건축물에 대한 화재위험성과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 제연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에 대한 현행 법적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고,
- 소방특별조사와 관련해 당해 건축물 관계인에게 사전 서면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불시 조사가 일반화되도록 하는 한편,
-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여 건물주 등 관계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방 및 대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화재 위험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중 다음 사항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하나, 영 [별표5]에서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현행)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천 m^2 이상 → (개선) 연면적 1천5백 m^2 이상
- (현행) 지하층·무창층 4층 이상인 층 600 m^2 이상 → (개선) 300 m^2 이상

- 둘, 영 [별표5]에서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현행) 정신의료기관·요양병원·노유자시설 바닥면적의 합계 600 m^2 이상인 모든 층 → (개선) 면적제한 없이 의료시설·노유자시설 전체
- (현행) 복합건축물 연면적 5천 m^2 이상인 경우 모든층 → (개선) 연면적 1천 m^2 이상

- 셋, 영 [별표5]에서 제연설비 설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현행)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되는 근생, 숙박, 위락, 의료, 노유자,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2 이상인 층 → (개선) 지하층·무창층 삭제
- (현행)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m^2 이상 → (개선) 지하층·무창층 삭제

- 넷, 법 제4조의3제1항의 소방특별조사 7일 전 서면통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 (현행)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개선) 삭제

- 다섯, 영 [별표10]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 (현행)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200만 원
→ (개선) 300만 원

- (현행)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 100만 원,
2차 : 200만 원, 3차 : 300만 원
→ (개선) 1차 : 300만 원, 2차 : 500만 원, 3차 : 1,000만 원

붙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2018. 2. 2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붙임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안 조문대비표

1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개선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현행	개정안
<p>[별표 5] 1. 소화설비 가~나. (생략)</p> <p>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p> <p>1) <u>연면적 3천㎡ 이상</u>(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u>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층</u>이 있는 것은 모든 층</p> <p>2) (생략)</p> <p>3) 1)에 해당하지 않는 <u>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u>이 있는 것은 모든 층</p>	<p>[별표 5] 1. 소화설비 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 -----</p> <p>1) <u>연면적 1천 5백㎡ 이상</u> ----- ----- ----- -----<u>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u>-----</p> <p>2) (현행과 같음)</p> <p>3) (삭제)</p>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개선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현행	개정안
<p>[별표 5]</p> <p>1. 소화설비 가 ~ 다. (생략)</p> <p>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u> 가) <u>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u> 나) <u>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u> 다) <u>노유자시설</u> 라) <u>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u></p> <p>5) ~ 10) (생략)</p> <p>11) <u>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u>에는 모든 층</p> <p>12) ~ 13) (생략)</p>	<p>[별표 5]</p> <p>1. 소화설비 가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의료시설·노유자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u></p> <p>5) ~ 10) (현행과 같음)</p> <p>11) ----- ----- ----- <u>연면적 1천㎡ 이상인</u>----- -----</p> <p>12) ~ 13) (현행과 같음)</p>

③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개선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현행	개정안
<p>[별표 5]</p> <p>5. 소화활동설비</p> <p>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생략)</p> <p>2) <u>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u></p> <p>3) <u>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u></p> <p>4) ~ 6) (생략)</p>	<p>[별표 5]</p> <p>5. 소화활동설비</p> <p>가.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u></p> <p>3) <u>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u></p> <p>4) ~ 6) (현행과 같음)</p>

4 소방특별조사 7일 전 서면통지 규정 개선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p> <p>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p>	<p>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p> <p>① <삭 제></p> <p>1. <삭 제></p> <p>2. <삭 제></p> <p>①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2.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p>

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

-----.

④-----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

⑤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법 과태료 상향 개선안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0조 관련)

1. <생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현 행			개정 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한 경우 1) 2) 및 3)의 규정을 제외하고 소방시설을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지 않은 경우 2)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가)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한 경우 나)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 제1호		100			100	
		200			300		
			300			300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3조제1항 제2호	100	200	300	300	500	1000